

월15만원 기본소득부터 햇빛소득까지... 농촌 소멸 대응 본격화

기획재정부,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농촌 소멸 대응... 기본소득·빈집 정비·햇빛소득마을 고령화 대응... 왕진버스·여성농업인 건강검진 등

내년부터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한 기본소득 지급이 처음으로 시행되고 쓰레기 수거·빈집 정비·의료 서비스까지 농촌 생활 여건 개선 정책이 대거 가동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농어촌 소멸 대응...기본소득·빈집 정비 강화·햇빛소득마을

정부는 내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

해당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주민등록 요건(신정일 기준 30일 이상 거주)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한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 수거지원단을 구성해 수거 활동비를 지원하며, 시·군별로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농업인의 노후 안전망 강화를 위해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도 인상

된다.

지원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 인상을 통해 내년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인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월 최대 5만3500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 지원이 확대된다. 철거가 필요한 빈집의 경우 1호당 최대 지원액이 기존 7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주민이 직접 태양광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도 본격화된다.

시행 주체인 마을협동조합이 구성되고, 주민 동의와 설치 재원, 전력 계통 연계 가능성 등이 확보된 농촌 마을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300kW~1M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500개소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매년 초 공모 계획을 발표해 연 100개소 이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발전 수익은 마을 공동버스 운영, 무료급식 등 마을 공동체 단위의 공익 사업에 활용하도록 추진한다.

공동영농 확산 지원도 강화된다. 논(쌀 제외 타작물)·밭의 규모화, 농업 경영주체를 조직화하고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 도모하기 위해 '공동영농 확산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한



다. 소규모 경제체의 조직화·농지임대(또는 출자) 관련 사전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규모화·이모작 등을 위한 시설·장비, 생산 농산물 판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령화 농촌 대응...왕진버스·여성농업인 건강검진 확대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촌 왕진버스 의료서비스도 확대된다. 대상 지역은 기존 91개 시·군에서 112개 시·군으로 늘어나며, 재택진료와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내용도 강화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역시 대상 연령이 51~70세에서 51~80세로 확대되고, 검진 인원도 5만명에서 8만명으로 늘어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등 사용자도 그가 고용하는 계절근로자를 위해 농

업인 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질병·사망 등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기간 시·군별 산정된 기본 보험료율에 가입자별 누적 손해율(1~5년)에 따른 할인·할증이 적용됐다면 내년부터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할증 시 제외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재해의 예측·회피 불가능성을 고려해 거대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할증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기본적인 할인·할증제도는 유지하되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농가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재해의 경우에만 해당 재해로 인한 손해를 할증 시 제외한다. /뉴시스

자녀 1명당 공제 50만원 상향 월세·연금까지 세금 덜 낸다

정부가 자녀 양육부터 주거, 노후까지 생애 전반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먼저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자녀 수와 무관했던 기본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이 추가된다. 해당 제도는 내년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 기준으로 바뀐다. 현재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

과세되던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구일수록 실질 지원이 커진다.

교육비 부담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또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연 100만원 초과 시 배제)을 폐지한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직장 등의 사유로 부부가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주택 주말부부'의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부부 합산 한도는 연 1000만원이다.

노후소득 과세도 완화된다. 사적연금을 중



신 형태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춘다.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뒤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 대비 세액 감면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기존 15%에서 40%로 공제율을 높여 지역 기부 활성화를 유도한다.

/뉴시스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제도 신설

시행일: 2026년 1월

- 내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개 지자체를 선정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여행하면 경비 50% 지역화폐로 환급

내년부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여행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충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여행경비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여행 시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환급한도는 단체 20만원, 개인 10만원이다.

정부는 내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20개 지자체를 선정해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를 시범으로 시행하고, 2027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치유관광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내년 4월 9일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치유관광산업 지원 관련 법정부처 협력체

지역사랑 휴가 지원 제도 시범 도입... 2027년부터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15만원으로 7.1% 인상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국가유산수리 손해 책임 확대

계 구축, 치유관광사업 업종 신설, 지역특성에 맞춘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이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은 연간 14만원에서 15만원으로 7.1% 인상된다.

이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미술품 자본업, 미술품 대여·판매업 등 기간 자유업이던 미술 서비스 6개 업종은 내년 7월부터 제도권 내에 편입된다. '미술진흥법' 적용에 따라 미술 서비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유산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범위는 설계·감리 분야까지 넓힌다.

기준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한정했으나, 국가유산의 원활한 수리를 위해 국가유산수리실적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까지 책임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국가유산수리업자 장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미가입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내용은 내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뉴시스



김



전복



대파



울금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물

